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사후연구원의 법적지위 보장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4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주희 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겸임교원 등의 범위에 박사후연구원을 명시하여 이들에 대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 <u>겸임교원 및 초빙교원</u>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 ----- ----- ----- <u>겸임교원·초빙교원 및 박사후연구원</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독립적인 연구자(교수·선임연구자 등)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들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²⁾

□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의 핵심 인력으로서 논문 작성,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등 연구성과 창출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하에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박사 학위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낮아 연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⁴⁾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2021.12.

4) 박사후연구원의 처우와 관련한 자료는 ‘<참고 1> 박사후연구원 관련 주요 통계 현황’ 참조

특히 박사후연구원은 법적 지위가 분명치 않아 국가 차원에서 그 규모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박사후연구원을 바라보는 대학의 관계자, 박사후연구원 자신, 지도교수 모두 박사후연구원을 직원도 교수도 아닌 애매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자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박사후연구원은 대학내 다른 이들과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어 대학에 특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의 범위에 박사후연구원을 명시하여 이들에 대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는 향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박사후연구원들이 대학에 소속감을 가지고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함으로써 대학운영의 효율성과 연구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17조에 규정된 겸임교원 등은 학교현장에서 주로 교육활동(강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박사후연구원은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인재로서 겸임교원 등과는 그 역할이 상이하므로, 이들과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현재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56)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해당 법률안

5) 배상훈, 「박사후연구원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 2024.5.

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지위 명문화(제14조), 임무범위 규정(제15조), 자격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 규정(제16조) 등 현행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함께 개정하고 있음.

교육부도 박사후연구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동 개정안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박사후연구원 관련 주요 통계 현황

구분		박사후연구원	
		빈도(명)	비율(%)
합계		4,291	100.0
연 봉	1,000만원 이하	99	2.3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91	6.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44	12.7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1,396	32.5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040	42.2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540	12.6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228	5.3
	7,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74	1.7
	8,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27	0.6
	9,000만원 이상~1억 미만	31	0.7
	1억 이상	21	0.5
계약기간	1년미만	647	15.1
	1년	2,855	66.5
	1년~2년	230	5.4
	2년~3년	374	8.7
	3년~4년	108	2.8
	4년~5년	33	0.8
	5년~6년	20	0.5
	6년~7년	4	0.1
	7년~8년	9	0.2
	8년~9년	2	0.0
	9년~10년	2	0.0
	10년 이상	4	0.1
인건비 재원	확인불가	3	0.1
	정부기관	3,444	80.3
	공공기관	204	4.8
	대학교	440	10.3
	민간기관	105	2.4
	공공연구소	45	1.0
	지방자치단체	13	0.3
	기타	38	0.9
참여 중인 국가재정지원 사업	확인불가	2	0.0
	BK21	452	10.5
	중견연구자지원사업	441	10.3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330	7.7
	박사후연구원 국내연수사업	202	4.7
	대학중점연구소사업	185	4.3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144	3.4
	기초연구실지원사업	119	2.8
	세종과학펠로우십	109	2.5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75	1.7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62	1.4

주.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상 조사(응답기관 128개 대학)
자료. 배상훈, 「박사후연구원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 2024.5.